



평가보상위원회 규정

2013.07.10 제정

2018.04.27 개정

2019.04.19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동아에스티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 이사회의 평가보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의2 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"임원"이란 상무에 종사하고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관리자를 의미하며 집행임원을 포함한다. <신설 2018.04.27>

제2조 (적용범위)

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 회사,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개정 2018.04.27>

제3조 (위원회의 직무와 권한) <개정 2018.04.27>

① 위원회는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을 수립한다. <개정 2018.04.27>

② 위원회는 매년 회사 및 대표이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1항에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. <개정 2018.04.27>

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개별 임원의 성과평가와 보상은 제1항에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가 수행한다. <개정 2018.04.27>

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 <개정 2018.04.27>

제 2 장 구 성

제4조 (위원회의 구성) <개정 2018.04.27>

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
② 위원회는 이사 3인으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인 위원 중 호선한다. <개정 2018.04.27>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 <개정 2018.04.27>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. <개정 2018.04.27>

제 3 장 회 의

제6조 (위원회의 소집) <개정 2018.04.27>

-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8.04.27>
- ② 삭제 <2018.04.27>
-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18.04.27>
- ④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04.27>
- ⑤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4항의 절차 없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 <신설 2018.04.27>

제7조 삭제 <2018.04.27>

제8조 삭제 <2018.04.27>

제9조 (의결방법)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8.04.27>

제10조 (부의 사항)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04.27>

1. 임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보상기준 수립 <개정 2018.04.27>
2. 매 사업연도 회사 및 대표이사 성과목표의 승인 <신설 2018.04.27>
3. 매 사업연도 회사 및 대표이사 성과의 평가 <신설 2018.04.27>
4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<개정 2018.04.27>

제11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2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3조 (통지의무)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8.04.27>

제14조 (간사)

-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<개정 2018.04.27>

제 4 장 보수의 지급

제15조 (보수의 종류)

- ① 임원의 보수는 해당 직위와 개인의 실적에 따른 기본연봉과 회사 실적평가 결과에 연동하여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성과연봉 및 퇴직금으로 구성한다.
-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6조 (임원의 보수)

- ① 기본급여는 <별첨1> 임원 기본급여테이블에 따르며, 기본급여의 인상률은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한다. <개정 2018.04.27>
- ② 성과연봉은 회사의 정해진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한다.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 <개정 2018.04.27>

제17조 (지급방법)

- ① 기본급여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월단위 정액으로 지급하며, 성과연봉은 회사 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한다.
- ② 보수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사망자에 대한 보수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.

제 18조 (지급일)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 19조 (단수계산) 제 보수계산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상한다.

제20조 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8.04.27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9.04.19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1]

임원 기본급여 테이블

(단위: 원)

| 직 급 | 금 액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--|-----|
| 회 장 | 412,000,000 | |
| 부회장 | 278,100,000 | |
| 사 장 | 275,500,000 | |
| 부사장 | 206,000,000 | |
| 전 무 | 185,400,000 | |
| 상 무 | 154,500,000 | |
| 상무보 | 123,600,000 | |